



보문면 공고 제 2015 - 3호

보문면 농·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(CCTV)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보문면 미호리 409-6번지의 3개소에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농·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05일

보 문 면 장



1. 행정예고 내용 : 『보문면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(CCTV) 설치』

2.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

- 보문면 미호리 409-6번지의 3개소에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지침
-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 라인
- 행정절차법 제46조 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
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5년 11월 6일~ 2015년 11월 25일까지(20일간)

5. CCTV 설치예정 위치(4개소 4대)

- 보문면 미호리 409-6 (보문파출소 뒤)
- 보문면 송본리 137-9 (동막 입구)
- 보문면 오신리 493 (오류골 입구)
- 보문면 독양리 786-1 (독양 철교)

※ 설치 위치도 : 붙임2 참조

6. 공고방법 :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 및 보문면 홈페이지

6. 의견제출

- 보문면 미호리 409-6번지의 4개소에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(CCTV)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문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CCTV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-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예천군 보문면사무소 총무담당
 - 가. 주 소 :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사무소
 - 나. 전화 및 팩스 : ☎ 054-650-6606, FAX 054-650-6686
-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